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7월 23일

(전 문)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하 농과원)은 농업생명과학분야 발전을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및 응용연구와 농업현장의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관련 기관이다. 또한 농업생명관련분야 학술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농과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원을 통해서 발표되는 농업생명분야의 모든 학술연구 결과는 공평하게 평가되어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원 소속 모든 연구원들이 보다 수준 높은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농업생명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연구원 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윤리규정의 제정은 농업생명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농업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농업인의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농과원에서 제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소속 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 및 지적활동에서 윤리수준을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 령)

제1조 (사회적 책임)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제2조 (기본 연구윤리)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 (보편성의 원칙)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농촌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법령의 준수)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 (연구대상의 존중)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농촌 및 지역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룰 때에는 환경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규정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들에서 저자표시는 연구

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 (연구환경 조성)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 (윤리 교육의 실시)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인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규정운영 방안)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경우나 논문집 투고논문이 이 규정을 저촉했을 시에는 경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년 7월 23일).